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2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12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12. 15) 상정
- 제116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2004. 12. 15)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최 중 화)

가.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조항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시달(2004. 11. 1, 경기도)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법률명칭변경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하여 반복되는 감면조항 문구를 간결화 함.(안 제2조제2항)
-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경감률 적용에 관한 감면방식을 명확히 함.(안 제30조 신설)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장애인 차량의 감면 기준 변경 사유는?	○ 장애인 차량의 감면 기준에 있어서는 배우자도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면제를 하도록 함.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23호
의결 년월일	2004.12.23 (제116회)

제출년월일 : 2004.12. 8.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감면조항 문구를 정리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시달(2004. 11. 1, 경기도)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법률명칭변경에 의하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변경하고,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하여 반복되는 감면조항 문구를 간결화 함.(안 제2조제2항)
- 나.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감면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종합토지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적용상 혼란이 있으므로 경감률 적용에 관한 감면방식을 명확히 함.(안 제30조 신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을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로,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을 “보철용”으로 한다.

제30조를 제31조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만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p>

현 행	개 정 안
<p>제후유의증환자와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p>③ (생략)</p>	<p>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31 331 411 367"><u><신 설></u></p> <p data-bbox="199 645 667 680"><u>제30조(시행규칙)</u> (생략)</p>	<p data-bbox="801 331 1383 367"><u>제30조(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u></p> <p data-bbox="833 394 1383 618">이 조레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p> <p data-bbox="801 645 1383 743"><u>제31조(시행규칙)</u> (현행 제30조와 같음)</p>